

# 재정경제부, 공사계약제도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유보하였다. 올 하반기 중 건설경기 회복추이를 보가며 확대시기와 대상규모를 검토하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이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부공사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턴키·대안입찰 및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공공공사에서 최적의 계약대상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계약체결일로 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턴키·대안입찰에 있어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데 따른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한 최저가격 낙찰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건설경기 회복의 추이를 감안해 확대시기와 대상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이와 별도로 최저가격 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감리제도, 보증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국내입찰까지 넓히고 조정대상 분쟁의 유형도 입찰 및 낙찰관련사항을 비롯해 계약금액조정, 하자발생 등 계약전반에 걸친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재정경제부는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쟁입찰에 부칠 계약의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으로 한정된 계약관련정보 공개제도를 계약상대방·계약금액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제한기준, 경감기준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상의 모호하고 미흡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30여 개에 이르는 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통·폐합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